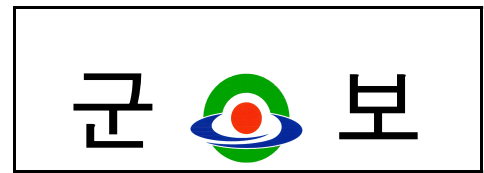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197호 2019. 10. 23.(수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(예천군 공고 제2019-1180호)

회 람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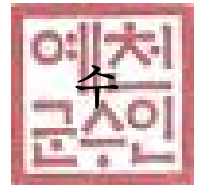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10월 23일

예 천 군



1. 개정 이유

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말로 순화하여 주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

(안 제1조의2제7호)

○ 계리(計理) → 회계처리

3. 개정규칙안 : 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담당 : 재무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·반 여부와 그 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우편, 방문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
- 전화 : 054-650-6879, 팩스 : 054-650-6139
- 전자우편 : jang6621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

예천군 규칙 제 호

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7호 중 “계리(計理)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의2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1조의2(정의)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“특별회계”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<u>계리(計理)</u>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.	7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회계처리</u> ----- ----- -----.
8. ~ 9. (생략)	8. ~ 9. (현행과 같음)